

의안번호	2211984
의 퇴 인	김주영의원
회 답 일	2025.8.8.
추 계 번호	25B4231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(적용 제외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(제1항) 2. 해당 사업에서 <u>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 미만인 근로자</u>	의무규정
2	안 제45조(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)	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[이하 “기초일액(基礎日額)”이라 한다]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. 다만,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(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)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함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(적용 제외)	×	• 미첨부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－ 본문 참조
2	안 제45조(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)		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10조) 현행법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「고용보험법」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「고용보험법」의 적용 제외 기준을 ‘소정근로시간’에서 ‘월 보수’로 변경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변경되므로, 기존에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았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일부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변화할 수 있음
 - 그러나 현시점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적용 제외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
 - 또한, 개정안에서 「고용보험법」의 적용 제외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적용제외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
- (안 제45조) 개정안은 기초일액¹⁾의 산정기준을 ‘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’에서 ‘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’으로 변경하는 내용임
 - 현행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²⁾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,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준을 ‘평균임금’에서 ‘평균 보수총액’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임
 -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기초일액의 산정기준이 변경되므로, 구직급여 지급액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‘평균 보수총액’과 ‘평균임금’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

1) 기초일액이란,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함

2) 「근로기준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“평균임금”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.

소요를 추계하기 곤란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